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3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238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지방세 166,82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redacted]시 [redacted]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6. D로부터 ① [redacted]시 [redacted]구 E(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B 대지 8,617㎡, ② B 지상 건물 5,818,01㎡, ③ F 하천 2,400㎡, ④ G 하천 17,182㎡, ⑤ H 하천 660㎡를 출연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① 내지 ⑤의 토지 및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과세물건	과세표준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산출세액	감면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① B(대지)	1,120,210,000	389,260,810	389,260,810	0	77,852,160	77,852,160
② B(건물)	6,481,290,300					
③ F(하천)	240,000,000					
④ G(하천)	1,890,020,000					
⑤ H(하천)	72,600,000	2,904,000	2,904,000	0	580,800	580,800
소계	9,804,120,300	392,164,810	392,164,810	0	78,432,960	78,432,960
합계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표1]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 내역

라. 그 이후인 2016. 1. 11. G 하천 17,182㎡는 G 하천 13,443㎡, I 대지 430㎡, J 하천 6㎡, K 하천 3,303㎡로 분할되고, 2016. 9. 8. K 하천 3,303㎡는 K 하천 3,211㎡와 L 하천 92㎡로 분할되었다. 이후 L 하천 92㎡는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C병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B 대지와 연접한 나머지 F, G, H, K 각 토지(총 면적 20,144㎡)를 야외행사장, 연못과 동물사육장, 화단과 조경지,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공원 및 생태숲(이하 '공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6. 9. 23. I, L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다가구주택(대지면적 876㎡, 연면적 649.68㎡)을 신축하여 직원생활관(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고, J 토지를 기숙사 건물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이하, 위 B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 6. 15. 원고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140,641,680원, 지방교육세 12,302,060원, 농어촌특별세 6,151,030원 합계 159,094,770원(가산세 포함)과 [표3]과 같이 2013년 재산세 3,065,850원과 교육세 611,370원 및 2014년 재산세 3,388,000원과 교육세 677,600원 합계 7,733,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과세 물건	과세표준(원)	취득세(원, 세율 4%)			지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본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본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F	2,130,020,000	85,200,800	17,040,160	33,765,070	8,520,080	3,376,500	4,260,040	1,688,250
G								
H	72,600,000	2,904,000	580,800	1,150,850	290,400	115,080	145,200	57,540
합계	2,202,620,000	140,641,680			12,302,060		6,151,030	

[표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내역

□ 2013년 재산세 부과 내역(재산세, 교육세 합계 3,668,220원)

과세물건 (분할전 지번)	과세표준(원)	세율	재산세(원)	교육세(원)	합계(원)
F	661,371,480	종합합산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3,065,850	611,370	3,668,220
G					
H					

□ 2014년 재산세 부과 내역(재산세, 교육세 합계 4,065,600원)

과세물건 (분할전 지번)	과세표준(원)	세율	재산세(원)	교육세(원)	합계(원)
F	713,132,420	종합합산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3,388,000	677,600	4,065,600
G					
H					

[표 3] 2013년, 2014년 각 재산세 부과 내역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병원에 입원한 요양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자원봉사자나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생태숲과 산책로, 야외행사장, 연못, 동물사육장, 화단과 조경지 등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C병원의 입원환자들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책과 같은 걷기운동 등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I, L 토지를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원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진과 일반 직원은 병원의 필수불가결한 인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기숙사도 C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2013년, 2014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재산세 면제기한이 2013. 12. 31. 및 2014. 12. 31.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재 공원과 기숙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나)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에 의하면, ① "의료업"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을 말하고,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 ③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④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그 [별표 3]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필수적인 시설기준으로 입원실, 응급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이상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한방요법실(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탕전실(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외부 용역 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탁물처리시설(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가발전시설과 그 밖의 시설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3조는 "표준업무"란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1호), 제6조는 병원의 표준업무를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제1호), 다양한 필요에 의한 환자의 진료(제2호 내지 제8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

(1) C병원은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redacted]시 [redacted]구 M면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C병원이 자동차로 포항 시내에서 약 25분, 영덕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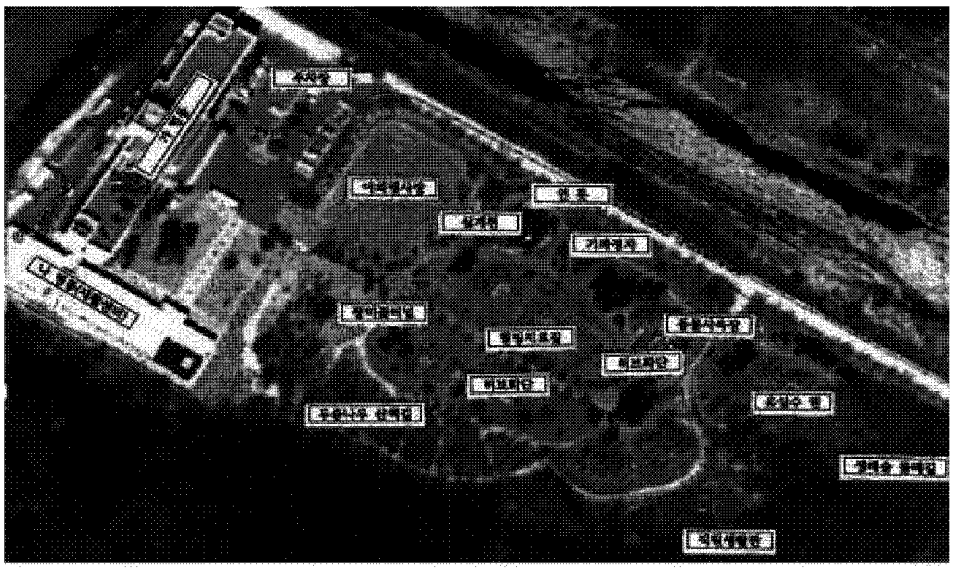
(2) C병원의 병동 정면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앞으로 바로 연접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다. 여기에는 야외행사장용 잔디밭이나 공원과 생태숲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에는 각종 나무와 꽃이 자라며, 통행로 또는 산책로(이하 '산책로'라고 한다)로 이용되는 길이 포장되어 있다. 산책로 옆으로는 화단과 잔디밭, 연못, 동물사육장 등이 있으며,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와 나무의자가 있다. 공원의 끝쪽에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 기숙사 주변은 주로 소나무와 두충나무를 심은 생태숲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은 아래 [표 4]와 같고, 그 일대의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토지	분할 후 토지	실제 사용현황
③ F(하천)	-	생태숲과 산책로(공원 부지)
④ G(하천)	G 하천 13,443㎡	연못, 실개천, 기와정자, 장미꽃터널, 동물사육장, 산책로 등(공원 부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I 대 430㎡	직원생활관 부지
	J 하천 6㎡	직원생활관 출입로
	K 하천 3,211㎡	유실수 원, 생태숲과 산책로(공원 부지)
	L 대 92㎡	직원생활관 부지
⑤ H(하천)	-	야외행사장

[표 4]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



[도면] 병동, 공원, 기숙사 일대의 형상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은 환자와 방문객의 만남 및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환자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이 사건 각 토지 중 기숙사 부지 부분은 C병원의 병동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또한 기숙사 앞쪽에는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 밖에서부터 기숙사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과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5) 한편 원고는 병동, 공원 및 기숙사를 C병원 전체로 보아 그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그 울타리로 병동, 공원, 기숙사 등의 시설과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병동과 공원 사이에도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그 울타리에는 별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병동에서 공원 및 기숙사로 향하는 출입문 앞쪽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울타리 출입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병동에서 공원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나) 기숙사의 사용현황

(1) 기숙사는 1층에 의사용 1인실 4개, 2층에 남자용 2인 1실 6개, 3층에 여자용 2인 1실 6개가 있고, 총 16개 호실에 최대인원 28명을 수용할 수 있다.

(2) 원고가 만든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는 C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고(제1조), 원고는 2인 1실에 입사한 자로부터 1인당 월 10만 원씩을, 1인 1실에 입사한 자로부터 1인당 월 20만 원의 입사비(숙소관리비 및 식비 포함)를 지급받는다(제5조).

(3) 기숙사에 거주한 사람은 2017. 1.경부터 그해 10.경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총 8명이고, 2017. 10.경 현재는 2명이다.

(4)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기숙사 중 203호, 303호, 305호의 출입문 앞면에는 당직실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203호에는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 덮개만 씌어 있을 뿐이고 이불과 베개 등은 없었으며, 303호에는 이불과 베개가 구비되어 있으나 사람이 침대를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5) 기숙사의 입사비 입금내역에 의하면, 203호는 한방의료진의 당직실로, 303호 및 305호는 간호사의 당직실로 각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20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호에는 2017. 1. 4.부터 의사 N가, 303호에는 2017. 1. 10.부터 간호사 O이, 305호에는 2017. 2. 1.과 그달 6.부터 간호사 P, Q가 각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진 등의 근무 현황

(1) C병원은 입원실 59개, 병상 353개를 보유하고 있고, 의사 10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54명 등 총 168명이 근무하고 있다.

(2) C병원에서는 매일 2명(의사 6명 중 1명, 한의사 3명 중 1명)의 의사와 4명의 간호사가 순번제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3) 의사들은 각자의 진료실에서 간이침대를 두고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별도의 당직실 없이 각 층별마다 복도 중앙에 마련된 안내데스크(desk : 접수처 겸 간이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4) 원고의 직원인 R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C병원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각자의 진료실과 안내데스크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별도의 당직실이나 거주시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으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항). 또한 제49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 내지 7호에서 부대사업으로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제1호),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제2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의료법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업'이란 인간의 질병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로서, 의료법 제49조 제1 내지 7호의 부대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1)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의료업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의료법 제36조 제1호와 그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는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원실, 응급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등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라고 할만한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료시설부터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 장례식장 등 부수시설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의료법 제49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취득세 감면(제20조)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그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①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전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② 특히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와 형식, 특히 노인복지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요양병원에 대해 위와 같은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화단 등 조경시설의 일반적인 기능과 설치 목적 및 화단 및 조경시설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산책과 같은 걷기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료행위나 의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병원의 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에서 산책과 운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의료업에 공원 부분을 간접적·부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이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기숙사 부지 및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의료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9. 26. 지금은 기숙사 부지로 사용되는 I, L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 9. 23. 비로소 위 토지 위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 및 J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및 2013년 및 2014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 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토지를 기숙사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의 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토지를 기숙사 부지 및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전에는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 등의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원 등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기록실	1	1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스를 말한다.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7

구분 /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